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고등법원장의 조정위원 위촉 및 조정전담변호사의 수당 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주요내용

- 고등법원장이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을 포괄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신설)
- 조정전담변호사 위촉권자 및 조정전담변호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5 신설)
- 조정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신설하고, 조정수당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제6조제4항)

4.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정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장”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소속 조정위원을 위촉한다.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지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상임 조정위원”을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전담변호사”로 한다.

제6조(일당 및 수당) ③ 조정전담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상임근무수당
5. 조정수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위촉된 조정전담변호사에게도 적용한다.

② (생략)

<신 설>

③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전담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상임근무수당
5. 조정수당

④ -----
-----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전담변호사에게 --

----- .

⑤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350